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6. 10 (금)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나. 회부일자 : 2005. 6. 20(월)
다. 상정일자 : 2005. 6. 22(화) 제12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6.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가. 제안이유

- '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작성·추진토록 권고하고 있고
- 평창군도 21세기 범지구적인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기구 설치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의제21 의제작성, 교육, 홍보 등 협의회 기능을 정함(안 제4조)
- 협의회 구성은 평창군과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민, 기업체임직원, 환경단체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함 (안 제5조)

- 협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함(안 제11조)
-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국내·외 연대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등을 시행토록 의무화 함(안 제2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서 세계 179개국의 정상들과 NGO대표들이 참석하여
 - 오늘날 인류의 생활기반인 지구는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인류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제도적 틀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는 지구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어, 후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바
- 지구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21세기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의제21』을 작성·실천도록 합의하였고
- 『의제 21』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작성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임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 번 호	165
-------------	-----

제출년월일 : 2005. 6. 10.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가. '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21세기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작성·추진토록 권고하고 있고
- 나. 우리군도 21세기 범지구적인 흐름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기구 설치에 필요한 지원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나. 의제21 의제작성, 교육, 홍보 등 협의회 기능을 정함 (안 제4조)
- 다. 협의회 구성은 평창군과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민, 기업체임직원, 환경단체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함 (안 제5조)
- 라. 협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함 (안 제11조)
- 마.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6조)
- 바.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사.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시행토록 의무화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나.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2004. 11.11 ~ 11.30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라. 기 타 : 설명자료 별첨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향평창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의제21”을 실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궤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리의고향평창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평창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평창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리의고향평창21” 의제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
2.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
3. 행정기관·민간단체·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5.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2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위원은 평창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을 위해 평창군 관련 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창군수가 위촉 한다.

제6조(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15명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환경복지과장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무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의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안의 처리)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정지원 등

제16조(경비의 지원)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정산)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제19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감사)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위원이 포함된 회계 및 사업감사 각1인을 두어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의 위탁) ①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3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의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설명자료

□ “지방의제 21” 정의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상들과 NGO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21세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지역주민과 합의 하에 의제21을 작성, 실천도록 합의 함
- 의제(Agenda)란 “토의하여야 할 과제, 해야 할 일”이란 뜻의 단어이고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하며,
- “지방의제21”은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시민등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를 거쳐 지역차원의 환경보전 활동의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동강령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임

□ “우리의고향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배경

- 우리군의 지방의제21은 군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바탕으로 “우리의고향 평창21”이라 정하였고 이를 작성하고 실천의 선동적인 역할과 민, 관, 기업의 상호협력 매개역할이 될 수 있는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음
- 따라서 우리군의 의제21인 “우리의고향 평창21”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하기 위함임

- “우리의고향평창21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의 기본이념
(조례안-제2조)
 - “의제21”을 실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이며, “우리의고향 평창21”를 추진하기 위한 최종 목표이기도 함
 - “우리의고향평창21 추진협의회” 기능
(조례안-제4조)
 - 1. 우리군의 의제인 “우리의고향평창21”를 수립하고 실천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등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실천함
 - 2. 작성된 의제21의 실천과정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므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도를 판단함
 - 3. 행정기관·민간단체·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므로써 범군민적 환경보전 운동의 구심 역할 함
 - 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제고와 인지도를 높힘
 - 5.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규정(안) 근거
(환경부, 강원도 공문지침 참고함)
 - 협의회 명칭 : 지역실정 및 여건에 맞게 명칭부여
 - 협의회 구성 : 관내 환경·교통·도시등 민간·환경단체+행정+기업체+ 학교등
- *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관내 각종 민간단체를 최대한 참여)

- 사무국 설치 : 별도 민간사무국, 기존단체 선정, 행정지원단 등
 -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민간·환경단체를 사무국으로 선정하되 지방의제21 계획수립 및 실무능력이 있는 단체를 이용하며, 군단위의 경우 사무국 담당 단체가 없을 경우 분야별 실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지원단이 사무국 역할도 가능 다만 지방의제21활동 평가시 민간 사무국은 가점부여
- 조례 내용은 협의회 구성 및 지역여건을 감안
 - ※ 목적, 명칭, 정기 및 수시회의, 의사·의결정족수, 분과위 구성등 포함
- 분과위원별 간사단체를 선임하고 협의회 참여 단체의 실무자급(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사무국장 소속으로 설치
 - ☞ 창립회의시 협의회 구성근거 및 조직, 정관, 환경선언문 등을 동시에 확정하여 지방의제21 기본체계 구축
- 지방의제21협의회 재정지원
 - ☞ 환경기본조례 및 협의회 구성 조례에 의한 예산확보후 지원
- 협의회 활동
 - ☞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실천·평가
- 계획추진은 전체를 다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추진해도 가능